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2004.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반영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지정 및 종토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관련법률명칭개정으로 인한 문구 수정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안 제2조,3조)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	○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아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4.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 (안 제32조의 2)

현 행	개 정 안
○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각각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3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